탄 원 서

피고인 조성현에 대한 무죄 선고 요청

사건번호 2026 고합 576	죄명 내란중요임무종사
피고인 조성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8-1 부 귀중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저는 조성현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개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인식이 엄격한 증거에 따라 판단되기를 바라는 시민으로서 무죄 선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4 년 12 월 3 일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가볍게 여기거나 위법한 명령을 정당화하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중대한 사건일수록 사건 전체에 대한 평가와 개별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구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공소장·증거기록 전부를 열람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래에 적은 시간과 경위는 공개된 공소장 인용 보도, 재판 보도 및 특검 간 의견 교환에 관한 취재 보도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서로 다투는 내용은 어느 쪽도 확정된 사실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1. 수호신 TF 소집과 국회 출동 이전의 인식을 따로 살펴 주십시오

공개된 공소장 인용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4 년 12 월 3 일 오후 9 시 48 분경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서 수호신 TF 소집 지시를 받았고, 오후 10 시 5 분경에는 합참 불시훈련으로 알리라는 취지와 공포탄 휴대에 관한 지시를 전달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후 오후 10 시 45 분경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가 이어졌다고 보도됐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과정과 예하부대의 동원 등을 피고인의 목적 인식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호신 TF 가 평소 대테러·국가중요시설 방호에 관한 임무를 수행해 왔다는 사정과, 그날의 소집이 실제로 어떤 목적에 이용됐는지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최초의 소집·출동을 합참의 불시훈련 또는 상황 대응으로 인식했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뒤에야 그 위법성을 분명히 알게 됐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습니다.

부디 재판부께서 소집 지시, 공포탄 관련 지시, 국회 출동 지시의 각 시점마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았는지, 어떤 임무라고 이해했는지, 지휘계통으로부터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분리하여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시 전달 사실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그 사실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과 중요한 임무 수행의 고의가 어느 단계에서 형성됐는지를 곧바로 단정하지 않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국회 진입·진압봉·협업 관련 지시의 맥락과 실제 이행을 함께 살펴 주십시오

종합특검은 국회로 출동한 제 35 특임대대 등의 움직임과 함께 진압봉 휴대, 경찰과의 협조를 통한 국회 진입, 후문 경로 파악, 특전사와의 협업, 국회 안 인원을 끌어내는 임무 관련 발언 등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예하 지휘관들에게 한 말이 단순한 현장 상황 공유를 넘어 국회 기능을 제압하는 데 필요한 지원 지시였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입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일부 표현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연락이었으며, 국회 본청에 진입하여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는 임무를 실제로 수행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최초 지시의 내용과 실제 하급자에게 전달된 표현이 같았는지, 예하 병력이 어디로 이동하여 무엇을 했는지, 국회 출입 차단이나 의원 강제 퇴거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등은 서로 구별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재판부께서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이나 통화 내용도 충분히 검토하시되, 각 표현이 나온 전후 대화와 당시 현장 상황, 지시 대상 부대의 위치와 실제 행동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명령의 일부 표현만 떼어 의미를 확정하기보다는, 그것이 내란의 중요한 임무 수행에 해당하는지와 그 당시 피고인의 인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오전 0 시 42 분부터 병력 복귀까지의 시간적 흐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공개된 자료들에 따르면 12 월 4 일 오전 0 시 42 분 무렵 이진우 전 사령관은 피고인에게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직후 단독 수행이 어려우니 특전사령관과 소통해 달라는 취지로 재검토를 건의했고, 오전 0 시 56 분경에는 국회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후속 지시가 있었다고 보도됩니다.

다만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가 첨예하게 갈립니다. 종합특검은 오전 1 시 4 분 무렵 후속 병력에 국회 이동과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임무를 언급했고, 오전 1 시 20 분의 대기·회군 지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가결된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시합니다. 피고인 측은 이러한 발언의 상당 부분이 상급자의 지시 내용을 알리는 상황 설명이었으며, 후속 병력이 서강대교를 넘어선 것을 확인하고 되돌리도록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지시의 문구와 취지에 다툼이 있는 이상, 오전 1 시 4 분경 통화 내용과 오전 1 시 20 분경 이동 중단 지시를 따로 떼어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론을 미리 내리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특히 국회 안팎에 먼저 도착해 있던 병력과 서강대교로 이동하던 후속 병력을 구분하고, 오전 1 시 47 분경 부대 복귀 지시가 내려졌다는 경위까지 하나의 연속된 시간 흐름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만일 피고인이 실제로 위법한 지시의 이행을 유보하거나 제한하고 후속 투입을 막은 사실이 증명된다면, 그 조치가 언제부터 어떤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인식·의사를 어떻게 보여 주는지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초기의 특정 행위만으로 이미 범죄가 성립했는지는 이후 조치와 별도로 엄격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4. 상반된 특검 판단과 보국훈장 수훈 사실을 정확한 의미에서 고려해 주십시오

조은석 내란특검은 피고인이 국회 출입 차단과 의원 강제 퇴거 등 일부 지시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고 병력 이동을 중단시킨 경위 등을 고려하여 불입건했습니다. 그러나 권창영 종합특검은 최초 출동과 후속 지시, 관련자 진술을 다르게 평가하여 기소했습니다. 2026 년 7~8 월 양 특검 간 공문 9 건이 오갔다는 취재 보도에서도, 각 시점의 지시가 실제 범행 수행인지 또는 제한·지연·불이행인지에 관한 견해 차이가 확인됩니다.

선행 특검의 불입건이 법원의 무죄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종합특검의 기소 역시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구나 선행 특검 측은 피고인의 모든 행위가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전체 행태와 결과를 종합하여 불입건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차이는 어느 한 기관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공소사실과 반론을 뒷받침하는 원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2025 년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은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계엄 당시의 병력 통제 등과 관련해 공적을 평가한 사정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수훈 자체만으로 무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상의 근거가 된 실제 행동과 그 시점, 해당 행동으로 이행되지 않은 지시가 무엇인지 등 객관적인 경위를 중심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법률과 증거에 따라 피고인 개인의 책임을 판단해 주십시오

형법 제 87 조 제 2 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매우 중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휘관이라는 지위, 명령 전달이라는 외형, 다른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이 사건 피고인 자신의 구체적 행위와 범죄 성립에 필요한 인식·의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후속 병력을 중단시킨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전의 모든 행위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변호인 측은 공소기각을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무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절차적 쟁점은 재판부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면서, 저는 시민으로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한 법률상 증명이 충분한지를 끝까지 엄격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 307 조 제 2 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도록 요구하고, 제 325 조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도 유리한 정황도 기록과 증거에 따라 충분히 심리해 주십시오. 최초 소집과 출동, 현장의 명령 전달, 위법한 임무에 대한 인식, 후속 병력의 대기와 복귀까지 모든 경위를 개인별 책임의 관점에서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심리 끝에도 조성현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부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저는 특정한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한 사람의 형사책임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공정하고 신중한 심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생년월일: _____